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검토보고서

2022. 11. 28.(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원)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김동원)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117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11. 15.
- 라. 회부일자 : 2022. 11. 18.

3. 제안이유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및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제1조(목적)의 인용조문 정비
 - 제1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을 ‘제18조의 7’로 변경
- 나. 제3조(기금의 용도)의 상위법령 조문의 재기재에 불과한 조항 수정 및 삭제
 - ‘제3조제1호~제11호’를 ‘제3조제1호~제3호’로 변경
 - ‘제3조제1호~제7호, 제9호~제10호’ 삭제
 - ‘제3조제8호, 제11호’는 유지하여 ‘제3조제2호, 제3호’로 올림

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삭제

-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함

라. 제3조 수정에 따른 근거조항 수정 정비 : 제6조(지원대상), 제8조(사업자금 대여), 제10조(신용보증)

- 제6조제5호 : '제3조제11호'를 '제3조제3호'로 변경
- 제8조제1항 : '제3조제2호'를 '영 제26조의4제4호'로 변경
- 제10조 : '제3조제4호'를 '영 제26조의4제7호'로 변경

마. 제15조(시행규칙) 삭제

- 상위법령 반복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정 삭제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자활기금의 적립),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규제여부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2. 10. 6. ~ 10. 26.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동의
- 3)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4) 제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2. 11. 3.)

6.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기금 조례로서 2022. 11. 15.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2-92호로 제출되어, 2022. 11.18.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 개정 취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반복, 중복,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 등의 재정비로 미비점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안 제1조(목적) 중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을 “「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4”로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3조(기금의 용도)의 상위 법령 조문 중 ‘제3조제1호~제11호’를 ‘제3조제1호~제3호’로 변경, ‘제3조제1호~제7호, 제9호~제10호’ 삭제, ‘제3조제8호, 제11호’는 유지하여 ‘제3조제2호, 제3호’로 올려 불필요한 조항을 수정, 변경, 삭제 하였으며
 - 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의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존속기한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3조 수정에 따른 근거조항을 제6조(지원대상) 제5호 중 ‘제3조제11호’를 ‘제3조제3호’로, 제8조(사업자금 대여) 제1항 중 ‘제3조제2호’를 ‘영 제26조의4제4호’로, 제10조(신용보증) 중 ‘제3조제 4호’를 ‘영 제26조의4제7호’로 변경 하였으며

- 안 제15조(시행규칙)는 상위법령 반복내용으로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항 정비 및 기금 존속기한 조항 폐지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법령 정비기준 및 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구 조례에 법 취지에 맞게 구체적이고 명확히 보완·반영하고 있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타 관련 조례도 면밀히 살펴어 변경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기타자료(비용추계서, 관계법규)

가.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인용 조항 정비와 기금 존속기한 조항 폐지와 관련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생활보장과 김수진
연락처	02-3153-6482

나. 관련 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 1. 15.>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2021. 7.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2. 30.>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6. “최저보장수준”이란 국민의 소득·지출 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제6조에 따라 급여의 종류별로 공표하는 금액이나 보장수준을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하는 금액을 말한다.

8. “개별가구”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이 법에 따른 자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조사를 받는 기본단위로서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가구의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 법 제2조제10호에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4. 20.]

[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5. 4. 20.>]

제26조의4(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2022. 1. 28.>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補填)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에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전문개정 2011. 9.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u> 2.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u>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u> 4. <u>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u> 5. <u>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u> 6.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시행 	<p>제1조(목적)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8조의7 -----</p> <p>-----</p> <p>-----</p> <p>-----</p> <p>-----</p> <p>-----</p> <p>-----</p> <p>제3조(기금의 용도) -----</p> <p>-----</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용도 2. <u>법 제2조의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복지 증진</u>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
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
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
성을 위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
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
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
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
람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
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
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
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
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11.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3. <중전의 제11호에서 이동>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저소득주민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5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
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 4. (생략)
- 5. 제3조제11호에 따른 사업 중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 ② ~ ④ (생략)

<삭 제>

제6조(지원대상) -----

-----.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3조제3호-----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영 제26조의4제4호-----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신용보증) 제3조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

<삭 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